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98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는 공시

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 정(안 제429조제3항)
 -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라.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함.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를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61조의2제1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한다) 및 그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이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50억원의 하나하는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

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 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만분의 1"을 "1만분의 1"로 한다.

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0조 후단"을 "제1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최초로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이 법 시행 당시 제16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으로 남은 법인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일까지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에 관하여는 제42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0조(반기·분기보고	 1서의 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출) (생 략)	, , , ,,	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2/ (0 1/		같음)
<신 설>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u> </u>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
		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
		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
		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
		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
		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레1C1ス/ᄌᄼᄭᄎᆜᆸᄀᄁ	こめ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u>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u>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1. ~ 9.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 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 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u>제</u>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 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

다음 날
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날까지로 한다)</u>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u>제</u>
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
<u>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u>
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
<u>이라 한다)</u>
②
<u>사업보고서등</u>

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 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 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 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 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

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 4.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생략)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저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u>관한 특례)</u> ①·② (현행과 같
<u>ㅇ</u>)
③
사업
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 제160조제1항
<u>에 따른</u>
④ (현행과 같음)
세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권신고서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한정한다)에는 -------과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 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 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 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 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12 01(1120-11101)
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u>100분</u>
의 10(10억원 미만이거나 그 법
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0억원)

-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기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⑤ · ⑥ (생 략)
-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109소, 세100소 또는 세101
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
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4
<u>1만분의 1</u>
1.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1. ~ 12. (생 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 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 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 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 · 감 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 로 하는 자 가. ~ 사. (생 략) 14. ~ 29.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60조제1항 후단
가. ~ 사. (현행과 같음)
14. ~ 29. (현행과 같음)